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5206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각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 B 소재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전소는 크게 ①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이하 '1차 발전설비'라 한다)와 ② 1차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배기열(폐열)을 배열회수보일러로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한 뒤, 그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킴으로써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이하 '2차 발전설비'라 한다)로 나누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각 '당초 신고납부세액(원)'란 기재 금액과 같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각 '경정청구대상세액(원)'란 기재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전소의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는 구분되는 별개의 설비이고, 2차 발전설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가 이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



미하는 점, 원고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1차 발전설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2차 발전설비),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설비를 이용한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참조).

따라서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권○○

판사 이○○



별지 1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피고	거부처분일	과세기간	당초 신고납부세액(원)	경정청구대상세액(원)
○○시장	2020. 9. 22.	2015. 6.	109,734,930	36,402,490
		2015. 7.	91,528,850	30,471,980
		2015. 8.	148,926,760	50,420,230
		2015. 9.	147,080,620	50,112,700
		2015. 10.	156,547,380	52,565,180
		2015. 11.	93,184,520	31,158,900
		2015. 12.	61,629,200	20,105,440
		2016. 1.	115,488,300	38,381,200
		2016. 2.	90,371,670	29,691,190
		2016. 3.	106,698,420	35,196,190
		2016. 4.	48,792,050	15,574,080
		2016. 5.	106,196,900	35,467,160
		2016. 6.	114,536,130	38,741,910
		2016. 7.	134,211,860	45,897,800
		2016. 8.	145,208,810	49,637,550
		2016. 9.	141,539,660	48,369,860
		2016. 10.	138,532,940	46,778,000
		2016. 11.	192,248,970	65,203,590
		2016. 12.	116,482,580	33,846,020
		2017. 1.	168,715,940	50,058,000
		2017. 2.	148,087,250	45,202,030
		2017. 3.	219,267,650	71,830,580
		2017. 4.	176,619,450	62,906,080
		2017. 5.	191,337,440	68,367,060
		2017. 6.	202,638,180	71,942,040
		2017. 7.	196,135,910	69,514,860
		2017. 8.	190,974,720	65,934,590
		2017. 9.	161,052,050	56,248,440
		2017. 10.	167,723,830	58,767,1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8

피고	거부처분일	과세기간	당초 신고납부세액(원)	경정청구대상세액(원)
		2017. 11.	202,910,900	70,346,850
		2017. 12.	225,039,760	78,290,320
		2018. 1.	210,371,770	72,323,280
		2018. 2.	191,404,060	64,733,290
		2018. 3.	243,942,200	83,895,880
		2018. 4.	226,820,220	78,733,130
		2018. 5.	233,143,050	82,355,930
		2018. 6.	212,233,870	76,605,300
		2018. 7.	157,519,300	57,114,030
		2018. 8.	135,865,960	48,035,050
		2018. 9.	134,655,380	48,054,790
		2018. 10.	182,687,870	64,018,350
		2018. 11.	149,586,340	52,649,850
		2018. 12.	183,778,510	64,808,330
		2019. 1.	208,032,920	72,727,000
		2019. 2.	170,887,600	59,528,650
		2019. 3.	175,227,680	62,042,200
		2019. 4.	190,092,460	66,620,450
		2019. 5.	187,199,220	66,097,260
		2019. 6.	107,227,240	37,374,320
		2019. 7.	189,798,190	68,065,020
		2019. 8.	188,962,840	67,567,700
		2019. 9.	147,761,150	52,393,890
		2019. 10.	142,118,210	49,382,490
		2019. 11.	163,944,870	57,837,380
		2019. 12.	166,087,380	56,668,030
		2020. 1.	172,882,430	59,792,500
		2020. 2.	165,014,540	58,055,370
		2020. 3.	168,294,080	57,779,460
		2020. 4.	118,527,710	41,358,060
		2020. 5.	95,524,860	34,820,730
합계			9,529,035,540	3,284,867,220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끝.